

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구미경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3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구미경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
김규남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김혜영, 김혜지,
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
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
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
박환희, 서상열, 서호연,
송경택, 송재혁, 신동원,
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
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
윤기섭, 윤영희, 이경숙,
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
이성배, 이은림, 이종태,
이종환, 이효원, 이희원,
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
최유희, 최진혁, 허 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53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청렴도 평가,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,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자발적으로 조성·확산하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청렴도 평가·조사 사업을 추가함(안 제6조 제2호 신설)

- 나.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의2 신설)
- 다.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, 공직자에 대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의3 신설)
- 라.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예방 청렴활동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(안 제2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라 한다)”로 하고,
제1호나목 중 “「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공무원
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며, 라목 중 “금품 등”을 “금품등”으로,
같은 조 제2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시”로 한다.

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2호는 제3호로, 제3호는 제4호로, 제4호는
제5호로 한다.

2. 청렴도 평가·조사

제6조의2부터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개인
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함에 있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
준수하여야 하며, 성명, 소속,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
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·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(청렴 포상 등) 시장은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및 청렴문화 조성 등에
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시 소속 부서와 기관·단체 및
공직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제3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는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서울특별시”는 “서울시”로 한다.

제17조는 삭제한다.

제22조제2항은 “서울특별시”는 “서울시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”를 “청렴문화 확산을 위해”로 하고, “반부패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”을 “반부패·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결백하고”는 “결백하고,”로, “서울특별시”는 “서울시”로, “선정 절차를”은 “선정 절차를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자체공적심의위원회를”은 “자체 공적심의위원회를”로, “수상후보자에”는 “수상 후보자에”로, “서울특별시”는 “서울시”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구성 한다.”는 “구성한다.”로, “서울특별시”는 “서울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호선하며,”는 “호선(互選)하며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개의하고,”는 “개의(開議)하고,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「<u>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</u>」 -----</p> <p>다. (생략)</p> <p>라. ----- <u>금품 등</u>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 <u>서울특별</u> <u>시</u>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----- -----</p> <p>제6조(청렴문화 활성화 사업)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<u>신 설</u>></p> <p>2. -----</p> <p>3. ----- -----</p> <p>4. -----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----- <u>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<u>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</u>」-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 <u>금품등</u>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 <u>서울시</u>----- ----- ----- <u>서울시</u>----- -----</p> <p>제6조(청렴문화 활성화 사업)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청렴도 평가·조사</u></p> <p>3. -----</p> <p>4. ----- -----</p> <p>5. -----</p>

<신 설>

<신 설>
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② (생략)

③ -----, 1회에
한하여 -----, -----
-----.

제13조(청렴 자율준수제) -----

----- 서울특별시 -----

-----.

제17조(인센티브 부여) 시장은 기관별

제6조의2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

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
른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
용함에 있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
준수하여야 하며, 성명, 소속, 전화번호
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
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·이용하여야
한다.

제6조의3(청렴 포상 등) 시장은 청렴

자율준수제 운영 및 청렴문화 조성
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
서울시 소속 부서와 기관·단체 및 공
직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
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② (현행과

같음)

③ -----, 한 차례
만 -----, -----
-----.

제13조(청렴 자율준수제) -----

----- 서울시 -----

-----.

<삭 제>

청렴자율준수 운영, 실적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,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22조(시민 청렴모니터단 구성 운영)

① (생략)

② ----- 서울특별시 -----

-----.

③ (생략)

제23조(청렴교육 및 홍보 등) ① (생략)

②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-----
-----, 반부패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 등 -----
-----.

③ (생략)

제24조(하정 청백리상) -----결
백하고 ----- 서울특별시

선정절차를 --- 서울특별시 -----

제26조(선정절차) ① -----

----- 자체공적심의위원회를 -----
----- 수상후보자에 -----

제22조(시민 청렴모니터단 구성 운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서울시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청렴교육 및 홍보 등) ① (생략)

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-----
-----, 반부패·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-----
-----.

③ (생략)

제24조(하정 청백리상) -----결
백하고, ----- 서울시 -----

선정절차를 --- 서울시 -----

제26조(선정절차) ① -----

----- 자체 공적심의위원회를 -----
----- 수상 후보자에 -----

----- 서울특별시 -----

-----.

제27조(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) ①

(생략)

② -----

----- 구

성 한다. -----

서울특별시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호선하며, -----

-----.

④ (생략)

⑤ -----

----- 개의하고, -----

-----.

⑥ ~ ⑦ (생략)

----- 서울시 -----

-----.

제27조(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) ①

(생략)

② -----

----- 구

성 한다. -----

서울시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호선(互選)하며, -----

-----.

④ (생략)

⑤ -----

----- 개의(開議)하고, -----

-----.

⑥ ~ ⑦ (생략)